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 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훈기·오기형·이성윤

김영배 · 송재봉 · 문금주

이연희 · 김기표 · 안호영

황명선 · 강훈식 · 이재관

남인순 · 김영환 · 김남희

복기왕 · 양부남 · 김현정

황정아 · 정진욱 · 위성락

민형배 · 박홍배 · 이수진

서영교 • 박지혜 • 이건태

정일영 · 장종태 · 박균택

정을호 · 허종식 · 임호선

임미애 · 김정호 · 신영대

어기구 • 신정훈 • 이기헌

이강일 • 차지호 • 권향엽

이용우 · 김원이 · 박민규

박희승 · 김용만 · 김남근

염태영 · 모경종 · 윤종군

김 유 · 이학영 · 조승래

김태년 • 박해철 • 박선원

정성호 · 오세희 · 전진숙

이상식 • 김태선 • 김 현

안태준 · 허성무 · 부승찬

유동수·조계원·이정문 김교흥·강유정·이재강 조인철·박성준 의원 (7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 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.

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·제6조제6항·제9조제4항 단서·제9조제5항·제9조제6항·제10조의3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.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 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

- 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- ⑥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

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 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가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및 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. 다만, 이법 시행 당시의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(임원) ① -----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 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명한다.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

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.
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
 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
 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  천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⑤ • ⑥ (생 략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u><</u>신 설>

<신 설>

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⑦·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----.. 다만, 제 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 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 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 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 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⑥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사

⑤ · ⑥ (생 략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 결한다.

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1. (생략) <신설> 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 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.

<u>⑦·⑧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

\_\_\_\_\_

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
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 11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

-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